**UN 특별 보고관 러시아에 북한과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을**

**시행하지 않기를 촉구**

제네바 (2016년 2월2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한 UN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러시아 정부가 DPRK 정부와 이달 새로이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을 시행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약 만 명 가량의 DPRK 국적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극도로 가혹한 근무 환경을 탈출하고 망명을 시도한다. 또한 다른 이들은 DPRK를 탈출하다가 러시아에 도착하기도 한다.

이하는 특별보고관의 성명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러시아가 2016년 2월 2일 새로이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최근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은 “불법으로” 자국을 떠나 “불법으로” 상대국 영토에 머무르는 개인을 이전 및 재입국하도록 한다.

러시아는 2015년 11월 DPRK와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별도 본국송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정보다 최근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이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DPRK 국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를 표한다. 이는 러시아가 준수해야 할 국제 의무에 반하는 일이다.

DPRK는 러시아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DPRK 국적 근로자를 체포 및 강제송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근로자가 착취당하도록 파견하는 것은 국가가 주선한 노예제도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것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현 시점에 본국송환협정의 체결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DPRK 내 인권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보고서(2014)\*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DPRK 국적자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위원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DPRK 국적자 본국강제송환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또한DPRK가 핵실험과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DPRK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해온 건설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단을 더욱 더 강화시킨다.

러시아로 하여금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DPRK와 체결한 본국송환협정을 이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DPRK 내 인권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보고서(2014)\* 읽기: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끝

*특별보고관 마루즈끼 다루스만(인도네시아)은 2010년 8월 UN인권이사회에서 DPRK 내 인권 실태 조사 임무를 부여 받아 임명되었다.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은 여타 정부나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 역량으로 독립적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3인으로 구성된 고 부토 파키스탄 총리 암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이 설치한 스리랑카 전범 관련 전문가 패널 의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3월부터 특별보고관 직과 겸임하여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DPRK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인으로 구성된 UN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특별보고관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한다. 특별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UN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 업무에 임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UN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DPRK:*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UN 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타렉 쉐니티 (+82 10 5927 8724/* *tcheniti@ohchr.org* */영어 문의) 또는 안윤교 (+82 10 6607 3595 /* *yahn@ohchr.org* */한국어 문의)로 연락 바랍니다.*

유엔 독립 전문가 관련 **언론 질의**: Xabier Celaya,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핸들(아이디,주소)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Facebook: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Instagram: [unitednationshumanrights](http://instagram.com/unitednationshumanrights)

Google+: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plus.google.com/%2Bunitednationshumanrights/posts)
Youtube: [unohchr](https://www.youtube.com/user/UNOHCHR)